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3가단54085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 담당변호사 박정원

변론 종결2024. 8. 27.

판결 선고2024. 11.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20. 11. 20. 접수 제124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사해행위청구의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무자(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주장은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갑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2016. 11.경 C의 채무 256,000,000원을 변제해 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C의 법률상 배우자로 C의 재산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8.경 다른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인해 근저당권이 말소된 바 있는 점, ③ 피고가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점 사이에 무려 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해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박근규

별지